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수입요건확인 절차 안내

(‘20.1.17,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)

□ 배경 및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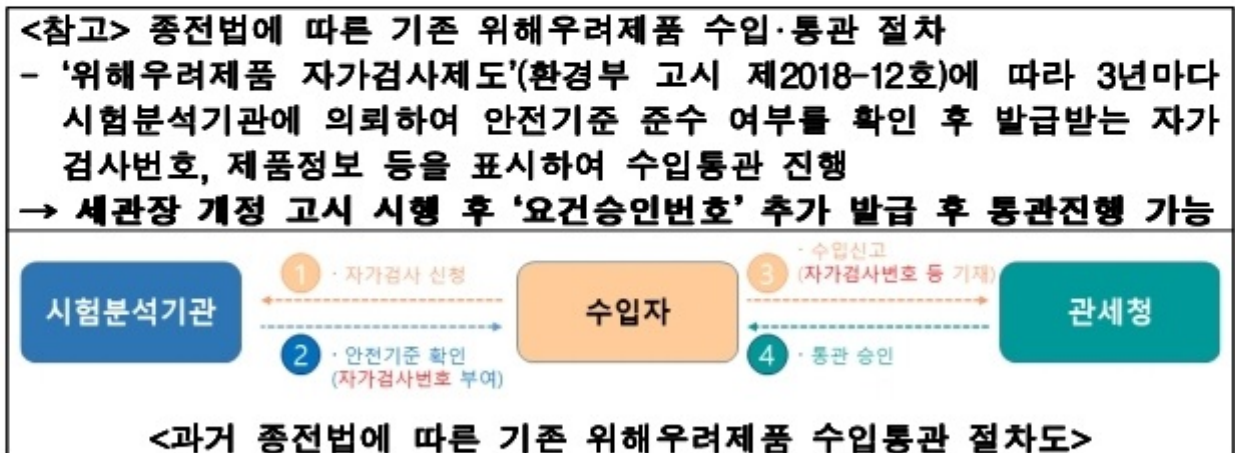
-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화학제품안전법’) 제정·시행(‘18.3.20. 공포, ‘19.1.1. 시행) 및 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(이하 ‘세관장 고시’) 개정(예정)에 따라,
- 해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국내 반입전 수입단계부터의 안전 기준 준수여부 관리와 동시에 적법제품 신속 통관 지원을 위해 변경(예정)된 수입요건확인 절차 등 안내

□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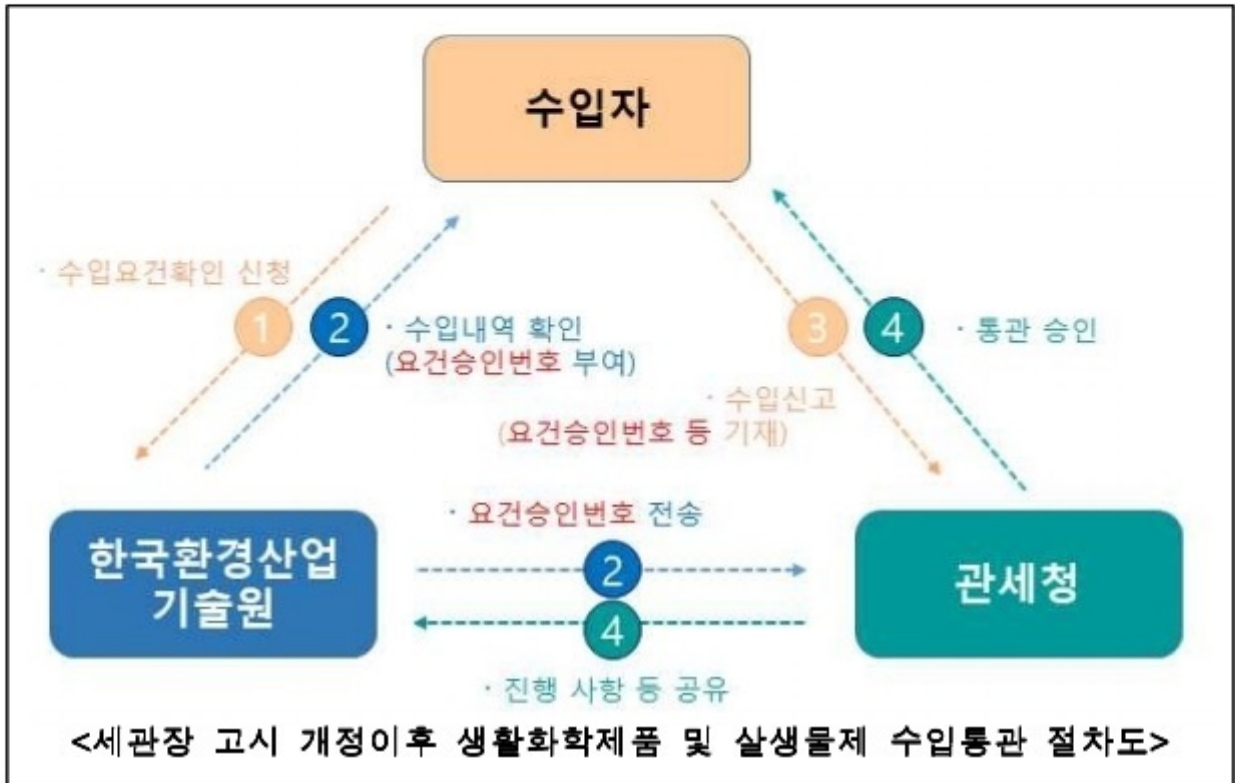
- 화학제품안전법과 종전법(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)에서 관리중인 제품별 수입요건확인 절차 등 안내
 - **CHEMP**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내 ‘전자민원’ 기능 활용, 요건승인번호* 발급 기능 등
 - * 요건확인대상 물품의 수입 신고시 필수 기재 필요

□ 세부내용

- (기본사항) 세관장 고시 개정 이후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관리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 시 화학제품관리시스템(chemp.me.go.kr)을 활용 ‘요건승인번호’ 발급 의무화, 미이행시 수입통관 불가



- (주요 변경사항)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'전자민원' 기능을 활용하여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제품별로 '수입 요건승인번호' 발급 후 수입통관 절차 진행



□ 참고사항

- 요건승인번호 발급신청 시 주요 절차(별첨 매뉴얼 참조)
 -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(chemp.me.go.kr) 회원 가입 필수
 - *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·승인을 위해 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로그인부터 진행
 - ② 시스템 로그인 후 '전자민원-수입 요건승인번호 신청' 클릭
 - ③ 수량 및 단위, HSK, 제조사 상호, 제조사 소재지(국가), 수입국 정보 입력 후 발급 신청 후 환기원 담당자 확인·승인 후 요건번호 발급
 - * 담당자 미승인 시 요건승인번호 사용 불가
- (문의처) ☎ 02-2284-1881